

[일련번호 : 14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 및 자체교육인정자 관리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동은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민방위기본법 시행령」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를 교육·관리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민방위기본법」 제23조(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,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,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 집행,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등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
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, ‘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’ 라고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(교육훈련의 면제) 및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와 증명서류(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)를 갖추어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사후대리신청도 가능하다.

「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」 제34조(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) 및 「민방위 업무

지침」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선·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같음하며, 이 경우 직장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, 위 규칙 제34조 제1항 제10호의 대상자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 또한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는 서면교육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·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서면교육인정 시 자체교육실시 확인서(서면교육과제물)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전결 규칙」 제5조(전결대상사무) [별표 4]에 따라 민방위대 교육관리에 관한 사무는 동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○○동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 면제 처리를 하면서 내부결재(동장전결) 없이 서울행정시스템에 교육훈련 면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.

[표1]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업무 부적정 내역

연번	대상자	생년월일	구분	면제사유(서울)	면제기간	부적정 처리내역
1			면제	해외체류 (3월 이상)	2024.1.1.~ 2024.12.31.	공문 및 증빙자료 미확인 (2024.11.8.)
2			면제	해외체류 (3월 이상)	2024.1.1.~ 2024.12.31.	공문 및 증빙자료 미확인 (2024.12.31.)

또한 2023년~2024년 기초생활보장 사유로 자체교육 인정 등록처리된 자에 대해 서면교육 등 자체교육 실시확인서를 미징구한 사실이 있다.

[표2] 자체교육 인정 부적정 처리 내역

연번	대상자	생년월일	자체교육 인정사유	자체교육인정기간		부적정 처리내역	비고
				시작일자	종료일자		
1			기초생활보장	2020-03-23	-	서면교육 실시확인서 미징구 (23,24년)	내부결재 미이행
2			기초생활보장	2021-11-25	-	서면교육 실시확인서 미징구 (23,24년)	내부결재 미이행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